

부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321528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9. 12.

판결 선고 2024. 10. 2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자이다.

나. 원고는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2023. 4. 17. 매도인 측을 대리한 피고와 C 이용권(이하 '이 사건 이용권'이라 한다)을 580,000,000원에 매수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¹⁾.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800만 원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2023. 4. 17. 2,000만 원, 4. 18.

3,000만 원, 4. 26.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돈을 받아 즉시 D에게 전액 송금하였고, D는 이를 다시 매도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 자료들을 전달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중개계약이 무산되자 원고는 피고가 E회원권거래소의 물건이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거래를 하였다고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매수인에게 2,900만 원을 반환한 후 중개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매도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원고에게 보내 주지 않았고, 이 사건 이용권을 피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D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개하는 것임에도 이를 속이고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양도금액을 올려 그 차액을 피고와 D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원고를 속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중개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서 이 사건 중개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비록 지체되었지만 매도인에 대한 송금자료를 피고가 D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원고 측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송금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제3자 거래소의 물건도 중개가 가능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 당시 이 사건 이용권이 E이용권거래소의 물건이 아님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거나 D와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²⁾.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중개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정현

1) 매도인은 이 사건 이용권을 F회원권거래소의 D에게 매도 중개를 요청하였고, D는 다시 피고에게 중개를 요청하였다.

2) 원고 측 매수인 또한 잔금을 제때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용권에 관한 정보는 잔금 지급과정에서 확인, 정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D와 직접 중개를 진행하였고, 매수인은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